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EU

任天堂, 구주위원회의
이의고지서 접수,
지적소유권라이센스
계약을 수정

구주위원회는 임천당이 “게임 소프트웨어” 업자와 체결한 지적소유권 라이센스(licence) 계약에 관하여 EU경쟁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고지서(異議告知書)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임천당은 동 이의고지서를 접수하고 동 계약 이외의 내용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구주위원회에 제출했으며, 7월 18일

구주위원회는 그 수정 내용을 수리했다.

본건에 관한 구주위원회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주위원회 발표문(7월 22일자)

구주위원회는 7월 18일 임천당에 대하여 개정된 동사의 표준인가 계약은 EU경쟁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통보했다. 임천당은 TV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기기 본체의 유력한 공급자 중의 1개 사이다. 임천당은 게임기로서 사용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독립계의 게임 소프트웨어 업자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계 게임 소프트웨어 업자가 임천당의 지적소유권 중에서 일정한 것에 접

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가 제도(licence scheme)를 설정하였다.

구주위원회와 영국의 무역산업은 쌍방의 합의 결과에 따라 임천당이 자사의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결정했다. 새로운 계약조항에는 자사로부터의 인가가 임천당의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도 판매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임천당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더욱이 당해 인가계약에서는 인가받은 게임 소프트웨어는 전속적으로 임천당에 의하여 제조되어야 하는 의무도 없게 되었다.

또한 구주위원회가 이의고지서에서 문제로 제기한 다른 제한 조항에 관해서는 모두 삭제 또는

경쟁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임천당은 당해 기획은 자사의 신형 게임기인 'N64'에 관해서도 적용되도록 그 내용을 구주위원회에 통보했다. 상기 라이센스 계약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구주위원회는 임천당의 게임 보이(Game Boy), NES 및 SNES에 관계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전부는 EU경쟁법상 문제가 없게 된다. 구주위원회는 임천당의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은 동사 게임기용 게임 소프트웨어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유럽의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권조사에 의한 심사 결과 구주위원회는 1996년 5월 15일 임천당에 대하여 게임보이, NES, SNES의 라이센스 계약에 관하여 이의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때 문제가 된 라이센스 계약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는 발매 이전에 임천당이 승인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방 면허를 받은 사람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조에 관해서는 임천당에 위탁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더욱이 연간으로 발매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종

류에 관해서 일정한 수량 이상은 금지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당해 라이센스 계약에 관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더욱이 가맹국간 혹은 계약자간의 거래에 충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심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구주위원회는 영국당국과 엄밀히 협력해왔다. 영국당국도 독점합병위원회에 의한 「영국에 있어 TV게임의 공급」에 관한 동일한 문제, 즉 임천당의 라이센스 계약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97. 7. 22, 구주위원회 발표

구주위원회, 보잉·맥도널 더글拉斯 사 합병승인 결정

구주위원회는 7월 30일 보잉 사에 의한 경쟁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사와 맥도널 더글拉斯 사(이하 MD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관계되는 구주위원회 발표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구주위원회 발표문의 골자

구주위원회는 본건 합병계획은 보잉 사가 세계 대형젯여객기 시장에서 이미 획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강화는

- ① MD사의 대형젯여객기 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력
- ② 항공 각사와의 사이에 장기적 배타계약을 체결하는 기회의 증대(이와 같은 모든 계약을 아메리카항공, 콘티넨탈항공 및 델타항공사와 체결하고 있다)
- ③ MD사의 방위·우주개발사업 (이것은 연구개발상의 이익이나 기술이전이라는 형태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서 장래의 이익을 갖는다) 능력 때문이다.

보잉 사는 구주위원회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주위원회가 보잉 사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의 내용에는

- ① MD사의 여객항공기 제조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다.
- ② 타항공기제조업자와의 관계

를 남용하지 않는다.

- ③ 고객 및 공급업자와의 관계를 남용하지 않는다.
 - ④ 현재 및 장래에 항공회사와의 사이에 배타적 공급거래를 중지한다.
 - ⑤ 공적예산에 의하여 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하여 구주위원회에 년 1회 보고서를 제출한다.
- 등의 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본건 합병과 관련 경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주위원회는 이들의 조건과 의무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은 공동체시장에도 적합하다고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구주위원회는 EU합병규칙, 과거의 위원회 결정 등과 구주 사업당국의 판례에 따라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금화의 결정에 이르렀다. 구주위원회는 보잉 사가 구주위원회가 지적한 경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해명서를 제출한 조치에 관해서는 완전히 순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동사가 이러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금후 엄격히 감시해가기로 했다.

구주위원회는 MD사의 민간항공기 부문인 더글拉斯·에어크라프트 사가 최근 사업이 부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부진은 자본 투자의 수준이 보잉 사 및 에어버스 사에 비하여 저조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동사에 의한 'MDXX프로그램'을 단념하고 또한 보잉 사에 의한 동사의 취득계획의 공포에 따라 투자가 및 고객의 신용의 저하로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보잉 사 자신이 합병계획을 공표했을 때에 「더글拉斯·에어크라프트 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당사에게도 매리트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매리트의 획득은 EU경쟁법 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EU와 미국 정부의 협력협정에 따라서 구주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본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구주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국방상 중대성에 관하여 표명한 우려를 고려에 넣었다. 구주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EU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고 자기의 조치에 관해서는 보잉 사와 MD사의 방위·우주개발분야에 관한 큰 지배력이 민간여객기 사업에 파급되는 영향에 관해서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여객기 분야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97. 7. 30, 구주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코카콜라 사와 칼스버그 A/S간 바틀링 합작투자사업 승인

유럽위원회는 코카콜라 사와 칼스버그 A/S간의 합작투자기 업인 Coca-Cola Nordic Beverages(CCNB)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동 위원회에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이 전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는 공동시장과 양립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제안된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덴마크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코카콜라 사와 칼스버그 A/S는 동 위원회가 지적한 경쟁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칼스버그 사가 보유하고 있는 Jyske Bryg Holding A/S (현재 펩시 제품의 바틀링(botilling) 업체이자 덴마크 제2위의 탄산음료 제조업체인 Bryggerigruppen A/S의 주식 62% 및 의결권 49%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분 및 덴마크 제3위의 콜라 상표인 Jolly Cola 제조업체인 Dansk Cola-drik A/S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매각 합의는 당해 사업에 의해 제기되는 경쟁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칼스버그 사가 보유하고 있는 Jyske Bryg 사의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Bryggerigruppen 사는 덴마크 탄산음료 시장에서 독립적인 제2위 업체가 될 수 있는데, 당해 자산매각은 덴마크의 2대 탄산음료 제조업체인 칼스버그 사와 Bryggerigruppen 사간의 연계를 단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동 위원회는 이들 합의서의 이행을 엄격히 감시할 것이며 합의서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기업 결합 관련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해 기업결합은 CCNB 사의 설립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코카콜라 사 및 칼스버그 사 공동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CCNB 사는 주로 코카콜라 사의 제품을 제조, 유통 및 판매하게 될 각국 바틀링업체들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칼스버그 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탄산음료 바틀링 자회사인 덴마크의 Dadeko A/S 및 코카콜라 사의 바틀링 업체인 스웨덴의 Coca-Cola Drycker Sverige(CCDS)를 취득할 것이다. 이후에 당사자들은 CCNB 사의 활동영역을 기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및 상페테르부르그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다.

코카콜라 사는 세계 최대의 탄산음료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환타 및 스프라이트이다. 칼스버그 사는 상당규모의 국제적인 맥주회사로서, 덴마크에 주요 탄산음료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동 회사는 덴마크에서 코카콜라 사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 제품(Tuborg 포함)의 바틀링을 담당하는 업체이다. 스웨덴에서 칼스버그 사

는 스웨덴 제3위의 맥주회사인 Falcon 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제안된 당해 사업이 상표 보유자 단계 및 바틀링(제조,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각각의 탄산음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덴마크를 보면, 브랜드 단계에서 현재 코카콜라 사는 시장점유율이 40~45%이며 칼스버그 사는 5~10%이고, 바틀링 단계에서 칼스버그 사의 시장점유율은 60~65%이다(이 중 Dadeko 사가 40~45%를 차지한다). 브랜드 단계에서의 최대 경쟁자는 펩시 사로서 시장점유율은 5~10%이다. 바틀링 단계에서 펩시 사의 바틀링업체는 Bryggerigruppen 사로서 약 15~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칼스버그 사의 최대 경쟁자이다. Bryggerigruppen 사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동 위원회는 칼스버그 사가 Bryggerigruppen 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지닌 Jyske Bryg 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동 위

원회는 코카콜라 사는 브랜드 단계에서 시장지배적이며 Dadeko 사는 바틀링 단계에서 시장지배적이라고 결론지었다.

CCNB 사의 설립은 브랜드 단계에서 코카콜라 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그리고 바틀링 단계에서 Dadeko 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동 위원회는 코카콜라 사와 바틀링 사업체의 수직적 통합, 칼스버그 사의 일정 탄산음료 브랜드의 코카콜라 사에의 라이센스, 칼스버그 사의 코카콜라 사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 소멸 및 여타 탄산음료 브랜드에 대한 칼스버그 사 및 Tuborg 유통망의 폐쇄를 통해 이러한 강화가 이루어 진다고 결정하였다.

스웨덴 시장에서도 코카콜라 사가 시장지배적이라는 징후는 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최근 스웨덴의 최대 맥주회사인 Pripps 사와의 탄산음료 바틀링 협정을 취소하고 스스로의 바틀링 사업체인 CCDS 사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한 용량의 생산설비가 Pripps 사의 제조 및 유통사업 내에서 유 휴상태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에서 당해 사업에 시장집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코카콜라 사나 CCDS 사의 현 지위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일단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건의 자산매각 약속이 포함된다. 특히 칼스버그 사가 덴마크 시장에서 Jyske Bryg 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동 회사의 최대 경쟁자인 Bryggerigruppen 사에 대한 칼스버그 사의 영향력이 제거되어 Bryggerigruppen 사는 덴마크 시장에서 독립적인 제2위 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위원회는 Bryggerigruppen 사가 덴마크 탄산음료 시장에서 존립 가능한 대안이 되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 이는 동 회사가 충분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펩시 사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 및 광범한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매각은 칼스버그 사와 Tuborg 유통망의 폐쇄 및 칼스버그 사의 코카콜라 사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의 소멸을 보상해 줄 것이다. 더욱이 Dansk Coladrik 사의 매각에 따라 Dansk Coladrik 사가 탄산음료 시장에서 칼스버그 사 및 코카콜라 사와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97. 9. 11, 유럽위원회 발표자료

유럽위원회, 소비자신용 부문 합작투자사업 설립 승인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소비자신용 부문에서의 Banco de Santander 사 및 Istituto Bancario San Paolo di Torino SpA(ISPAO) 사의 FINCONSUMO 사에 대한 공동 지배권의 취득을 허가했다. FINCONSUMO 사는 이탈리아 소비자신용 사업부문에서 주로 활동하며, 주요 활동 지역은 북부 이탈리아, 특히 Piemonte 및 Liguria 지역이다. 시장집중에 대한 각 회사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대상인 당해 사업이 공동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Banco de Santander 사는 스페인에서 광범한 지사망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유럽 및 남미의 다른 은행들에 투자하고 있는 국제적인 은행업 및 기타 금융업 그룹인 Santander Group의 최종적 모회사이다.

ISPAO 사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적 은행업 그룹으로서, 주로 이탈리아에서 광범한 영업망을 통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해 사업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제공되는 소비자신용의 한 유형에 관한 것으로서, Banco de Santander 사 및 ISPAO 사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다. FINCONSUMO 사는 동부문에서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97. 9. 18, 유럽위원회 발표자료

유럽위원회,
Frantschach 사 및
MMP 사의 폴란드
포장회사 취득 승인

유럽위원회는 Frantschach AG(이하 “Frantschach 사”

라 함)와 Mondi Minorco Paper SA(이하 “MMP 사”라 함)가 신고한 폴란드 기업 Zaklady Celulozy i Papieru w Swiecie “Celuloza” S. A. (이하 “Swiecie 사”라 함)의 취득을 승인하였다.

Frantschach 사는 Anglo American Corporation of South Africa Ltd(이하 “Anglo American 사”라 함)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셀룰로스, 일반지 및 마분지를 제조하며 종이 및 목재의 도매업도 겸하고 있다.

MMP 사는 Anglo American 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서의 셀룰로스 제조업 및 제지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Swiecie 사는 셀룰로스, 봉투종이, 포장지 및 마분지를 제조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이 지배적 지위를 형성·강화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영업활동은 봉투종이 및 골판지 영역에서는 중첩되나 이러한 영역에서는 당사자들이 보다 크거나 또는 동등한 규모의 경쟁자들에 직면하여 있고, 이들은 이러한 시장을 지배할 만큼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 취득을 승인하였다.

■ 97. 9. 29, 유럽위원회 보도

미국

미 법무부,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사의
Paxson Communications
취득 인가

미 법무부는 샌앤토니오에 소재한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Inc.의 Paxson Communications Corporation 자산 취득에 관하여, 이들 회사들이 플로리다 주 텁파에 소재한 Paxson 사의 광고판 사업을 당해 거래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므로써 인가(8월 29일)했다.

만일 원래 계획대로 Clear Channel 사가 Paxson 사의 텁파 지역 광고판 사업을 취득하도록 허용되었더라면 Clear Channel 사는 텁파 지역 옥외 광고시장에서 거의 65%의 점

유율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계약내용에 의해 Paxson 사의 텁파 지역 광고판 사업은 Clear Channel 사의 자회사이자 연간 규모 2,600만 달러의 텁파 지역 옥외광고 시장에서 주도적인 기업인 Eller Media 사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취득 제안이 원래대로 시행되었다면 이는 텁파 옥외광고주들의 선택폭의 축소 및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차관보인 Joel I. Klein은 언급하였다. “수정된 취득 계획은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존하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위협하지 않는 계약이 될 것이다.”

플로리다 주 웨스트 팜 비치에 소재한 Paxson 사는 Clear Channel 사와 분리된 상태로 있기 위하여 텁파 지역 옥외광고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Clear Channel 사는 Paxson 사의 여타 옥외광고 사업, 라디오 방송 사업 및 대학스포츠 라디오 방송권을 취득할 것이다.

비록 이들 회사들은 마이애미 및 텁파 지역에서 라디오 방

송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라디오 방송사업의 중첩은 중대한 반경쟁적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당해 취득의 기타 측면들도 경쟁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판-독립구조를 지난 건물 밖의 대형 광고게시판은 수천 명의 자동차 출퇴근자들이 매일 당해 광고판을 지날 때에 광고메시지를 전달 및 강화하기 위하여 마케팅 담당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광고주们 또한 종종 접촉범위 밖에 있는 활동적인 일상소비자들이 집밖에 있을 때 이들에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판을 이용한다. 옥외광고판은 종종 이러한 가치 있는 광고대상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시각적 전달방법이다.

Clear Channel 사는 25개 주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수입은 6억 5,000만 달러이다.

Paxson 사는 플로리다 주에서 옥외광고사업을, 3개 주-조지아, 테네시 및 플로리다 주-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

며, Bulls Arena 미식축구리그 Miami Toros 팀의 프랜차이즈와 전미아이스하키리그 Florida Eagles 팀의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수입은 약 9,000만 달러이다.

■ 97. 8. 29. 미 법무부 발표자료

FTC, 인텔 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 개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주요 컴퓨터 및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보 요구서를 송부함으로써 PC 산업에서의 인텔 사의 지배적地位에 관하여 광범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당해 반트러스트 조사로 인하여 PC 산업의 두 기둥인 인텔 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 모두 연방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인텔 사는 오늘날 판매되는 대다수 PC의 주요 부품인 실리콘 칩을 제조한다. 당해 산업에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1993년 후 반부터 미국 법무부의 반트러스트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9월 24일 빠른 우편으로 송부된 FTC의 민사조사요구서에서는 인텔 사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기타 컴퓨터 부품 내지 관련 지적 재산의 개발을 독점화 내지 독점을 기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당해 부문에서의 가격 또는 비가격 경쟁을 제한하려 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FTC가 궁극적으로 인텔 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당해 조사는 동 회사의 시장에서의 행동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인텔 사의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정부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면밀한 조사 하에 놓 이게 될 것이다.

인텔 사는 9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당해 조사의 통지를 받았음을 밝혔다. 대변인은 이러한 조사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결과 협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이 영역에서 모든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신

하며 인텔 사 및 직원들이 당해 영역에서 법을 계속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하고 상세한 교육 및 보고 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 사에 따르면 이번의 조사는 반도체 및 PC, 네트워크 등 폭넓은 범위의 사업 전반이 대상이라고 한다. 인텔 사는 FTC에의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력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해 조사는 인텔 사가 라이센스 관행을 통해, 또는 고객에 의한 컴퓨터 칩 공급량을 제한하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 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함으로써, 고객 및 경쟁자를 협박하고 있다 는 주장에 뒤따른 것이다.

“우월한 제품 및 선견지명을 통해 독점을 이루고 있는 한 이를 문제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을 장기간 자기 회사에 묶어 두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가격설정 내지 라이센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건 당시 법무부에서 일하였던 Brookings Institution

소속 경제학자인 Robert Litan은 말하였다.

Litan 및 기타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인텔 사의 성공에 관한 광범한 내용의 제소는 현재의 연방법원에서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당해 조사가 초기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송소를 위해 FTC는 궁극적으로 인텔 사의 고객 내지 공급업체에 대한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조사 대상인 관행들 중에는 인텔 사의 몇 안 되는 경쟁자로부터 컴퓨터 칩을 구매함으로써 당해 회사를 회피하는 고객들의 “징계”가 포함된다. 매사추세츠 주 Maynard에 소재한 컴퓨터 제조업체인 Digital Equipment Corp.은 인텔 사로부터 동 회사와의 법률적 쟁송을 개시할 경우 인텔 사의 컴퓨터 칩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인텔 사는 Digital 사가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자 한 발 물러섰다. Digital 사는 9월 24일 FTC로부터 조사요구서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인텔 사는 또한 새롭고 인기

있는 컴퓨터 칩을 선별적으로 고객들에게 배분하며 한 제품의 판매를 다른 제품과 연계한다고 비난받아 왔다. 당해 조사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FTC가 조사하는 관행에 포함된다고 한다. FTC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산업계 임원들은 또한 인텔 사가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Intel Inside” 광고 보조금의 사용을 지적하였다. 인텔 사가 PC 제조업체들의 광고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연간 10억 달러는 상당한 금액이라 제조업체들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공급업체의 컴퓨터 칩을 사용하기란 어렵다고 경쟁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10대 컴퓨터 제조업체 중 한 회사는 정부의 인텔 사에 대한 조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조사가 당해 산업 및 경제 전체를 위해 생산적인 일인지 모르겠다”고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Packard Bell NEC Inc.의 마케팅 담당 수석부사장인 Mal Ranson은 말하였

다. Ranson은 Packard Bell 사는 인텔 사로부터 받는 광범한 기술적 및 마케팅 관련 지원 때문에 “스스로 선택에 의해” 인텔 사의 칩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텔 사는 경쟁자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것은 인텔 사가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장지배적인 생산라인을 지렛대로 삼아 인접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텔 사는 록히드 마틴 사의 도움을 얻어 고안되는 칩으로 그래픽 칩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데, 록히드 마틴 사는 자사의 칩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함에 있어 인텔 사의 주도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인텔 사는 노트북 컴퓨터 화상처리용 칩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 Chips & Technologies Inc.가 발행을 마친 모든 주식을 공개매수 형식으로 취득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당해 주식매수가 반트리스트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의 여부에 관한 FTC의 광범한 조사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동 회사의

경쟁상대인 회사가 반트리스트 법을 방패로 기업결합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한 그래픽 회사의 최고임원에 따르면 이러한 그래픽 사업은 Digital 사의 주장과 더불어 FTC의 조사를 촉발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픽 사업부문의 경쟁자들은 인텔 사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인텔 사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자사의 기술 및 거점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PC 부품이라는 인근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인텔 사는 개인용 컴퓨터 내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기타 주변부품으로의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칩세트 사업부문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당시 Cirrus Logic Inc.처럼 칩세트를 제조하는 경쟁업체들은 자신들은 새로 출시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주요 정보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인텔 사 만큼 빨리 칩세트를 고안할 수 없다고 의의를 제기하였다.

시장조사업체인 Dataquest Inc.에 따르면 그 결과로 인텔

사는 칩세트 사업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현재 69%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인텔 사가 1993년 펜티엄 칩을 출시하였을 때 동 회사는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기타 칩들을 내장하는 시스템보드인 마더보드 사업에서 잠시동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대만의 다수의 회사들은 인텔 사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렸는데, 결국 인텔 사는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당해 사업에서의 영업을 축소하였다.

인텔 사는 칩세트 사업 및 마더보드 사업 모두에서 동 회사의 목표는 인근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회사의 생명줄인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당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실히 하려 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인텔 사는 또한 동 회사가 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한 수많은 경우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모든 그래픽 칩 제조업체들에게 이득이 되는 진보형 그래픽 포트가 있음을 예로 들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Robert Hall은 FTC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실망한 경쟁자들로부터의 많고 많은 불평을 걸러 낸” 후 연방법원에서 취해 질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건에서 법무부를 도왔던 Hall은 만일 FTC가 제소할 생각이라면 1970년대에 IBM 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 패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소의 내용을 좁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FTC는 위법 행위의 특정한 실례들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소송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들(인텔 사)은 모든 면에서 경쟁을 차단하는 장벽을 쌓았다”고 실리콘 벨리의 벤처자본가이며 Cyrix 사의 마케팅 담당 수석부사장이었던 James Chapman은 말하였다.

본 사건은 인텔 사에 대한 FTC 조사로서는 두 번째이다. 동 기관은 1991년에 조사를 개시하여 1993년 7월에 종료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텔 사의 시장력은 그 이후 증가하여 왔다.

법무부가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대한 조사는 동 회사가 브라우저 및 웹서버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및 온라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탁상용 컴퓨터 운영체계의 통제력을 이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97. 9. 25, The Wall Street Journal & 97. 8. 28 & 9. 25 일본경제신문

Jitney-Jungle/ Delchamps 기업결합 관련 화해에서 10개 점포 매각 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Jitney-Jungle Stores of America, Inc.와 Delchamps, Inc.간의 기업결합과 관련 이들과 화해를 하기로 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이로 인해 미시시피 주의 Gulfport-Biloxi, Hattiesburg 및 Vicksburg 지역,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Pensacola 지역의 수퍼마켓 소매가격이 경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당해 화해

성립으로 Jitney-Jungle 사에 의한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Delchamps 사 주식 매입은 이들 지역에서의 수퍼마켓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FTC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경쟁의 회복을 위해 Jitney-Jungle 사는 동 화해에 따라 10개 수퍼마켓을 Supervalu Inc.에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Supervalu 사는 이에 뒤이어 이들 점포들을 R&M Foods, Inc. 및 Southeast Foods, Inc.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커넥티컷 주 Greenwich에 소재한 Bruckmann, Rosser, Sherrill & Co., L. P.가 대주주인 Jitney-Jungle 사는 미시시피 주 Jackson에 소재하고 있으며 Delchamps 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한 Delta Acquisition Corporation과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Jitney-Jungle 사는 앨러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및 테네시 주에서 105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시시피 주에서는 72개의 점포를 운영하여 미시시피 주 최대의

수퍼마켓 사업자이다. Jitney-Jungle 사는 이를 점포들을 “Jitney-Jungle”, “Sack and Save”, “Mega Market”, “Mega Pantry” 및 “Jitney Premier”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앤더래마 주 Mobile에 소재한 Delchamps 사는 “Delchamps”라는 이름으로 118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수퍼마켓용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도매업체이며 이 사건의 피고는 아닌 Supervalu 사는 미네소타 주 Eden Prairie에 소재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의 주장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FTC의 소장에 따르면 Jitney-Jungle 사와 Delchamps 사는 집중 정도가 높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들이다.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은 가격 인상, 품질 저하 및 선택 폭의 축소, 또는 이들 영역에서의 기타 반경쟁적 영향을 방지하기에는 때늦은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성이 없거나 또는 충분치 않다고 FTC는 주장했다.

FTC가 피고들과 협상하여 이루어진 동의명령 합의 제안에 따라 Jitney-Jungle 사가 자신

의 5개 점포 및 Delchamps 사의 5개 점포를 지금으로부터 5개월 또는 당해 합의가 종국적으로 된 후 1개월 중 보다 장기인 기간 내에 Supervalu 사에 매각할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결합은 허용될 것이다(FTC의 동의명령 합의는 동 위원회가 이를 종국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어 일반으로부터의 논평을 얻는다). 만일 Supervalu 사가 동의명령이 종국적으로 된 후 3개월 내에 이들 수퍼마켓을 취득할 경우, 동 위원회의 승인과 합치하는 한도에서, 동 회사는 이들 점포들을 미시시피 주 Hattiesburg에 소재한 R&M Foods, Inc. 또는 루이지애나 주 Monroe에 소재한 Southeast Foods, Inc.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간 이후에 Supervalu 사가 이들 자산들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면 이는 또한 동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안된 당해 동의명령은 또한 피고들에게 10년 동안 미시시피 주의 Hancock, Harrison, Jackson, Lamar, Forrest 및 Warren 카운티, 그리

고 플로리다 주의 Escambia 카운티에 소재한 어느 수퍼마켓 이든 취득하기 이전에 동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 카운티에서 이들이 이전에 소유하였던 수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금지될 것이다.

■ 97. 9. 12, FTC 발표자료

FTC, 미시간주 Grand Rapids 지역의 병원간 기업결합 행정소송 철회

FTC는 Butterworth Hospital과 Blodgett Memorial Medical Center간의 기업결합이 미시간 주 Grand Rapids 영역에서의 급성 입원환자 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연방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FTC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있기 이전에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구하였다. FTC가 구하였다 이러한 연방지방법원의 조치는 두 병원

의 독립성과 존립가능성을 유지 시켜 만일 FTC가 행정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FTC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제6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항소 법원도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각하를 지지하였다. 1997년 9월 23일, 당해 병원들은 즉각 두 병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칠 것임을 공표하였다.

행정소송 철회에 대한 동 위원회의 투표결과는 3-0이었고, Pitofsky 위원장은 투표하지 않았다.

■ 97. 9. 26, FTC 보도

MS사 독점금지법 위반 피소

- MS 익스플로러 끼워판 협의로

미 법무부, 하루 100만불 벌금청구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매일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는 MS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미국에 이어 EU집행위원회도 최근 MS사의 독점금지법 저촉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가 이날 소장에서 MS사가 PC제조회사에게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윈도 95의 사용권을 주면서 윈도95 운영체계(OS)에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라고 강요함으로써 「95년 반독점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MS사가 컴퓨터업체에 윈도95 사용권을 얻는 조건으로 MS의 다른 프로그램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이에 대한 소장에서 MS사가 PC 제작 업체와 윈도95 정착 계약을 하면서 출시를 앞둔 PC에 IE를 설치할 것을 강요, 불공정계약관행을 금지한 '95년 법원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IE의 경쟁상품으로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70%의 넷스케이프 사의 「자바」프로그램은 어떠한 운용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나 MS의 IE는 MS의 윈도에만 적합도록 제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사 측은 MS사가 PC업체들에 강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윈도는 인터넷브라우저를 포함해 함께 기능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세트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윈도와 익스플로러가 특성상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법원의 독과점 판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 PC 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최전선은 웹브라우저 시장으로, MS사 역시 이 분야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컴퓨터(NC)라고 불리는 미래형 PC가 단순히 연산 기능, 워드프로세서 기능, 명령입력 기능만을 담당하고 윈도와 같은 기존 OS 기능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

이다.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불리는 「자바」기술이 크게 주목 받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MS사도 지난 해 10월 인텔 사와 손을 잡고 NC 개발에 뛰어들었다.

현재의 PC시장은 NC 개발을 놓고 선두주자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애플, IBM, 오라클 등 기존 NC표준그룹과 인텔, MS사 등 「넷트PC」그룹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 NC그룹들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채택했으며, OS도 IBM, 애플의 OS /2를 응용하고 있다. 만약 MS사가 웹브라우저 시장 장악에 실패, 기존 NC시장에 내 줄 경우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윈도95, MS워드, MS오피스 등 MS사의 모든 제품들이 한 순간에 쓸모없게 되어 지금까지 쌓아온 MS사의 아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MS사는 그동안 자체 개발한 웹브라우저 IE의 시장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MS사는 앞으로 법원판결이 독과점 금지법 위반으로 기울더라도 「윈도98」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계획은 계속할 것이

라고 밝혀, 「윈도」시리즈와 웹브라우저를 완벽히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선마이크로시스템 사도 최근 켈리포니아 연방법원에 MS사가 선사의 「자바」기술과 호환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조 키로 한 협정을 위반했다며 MS사를 제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선사는 이 소장에서 MS사가 자바와 호환이 불가능한 제품 생산을 중지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97. 10. 20, AFP통신

일본

일본 정부·여당,
은행지주회사의 일반기업
주식 보유 자회사 합계
15% 상한에 합의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 9월 26일, 은행지주회사가 그룹 자회사 전체로서 보유할 수 있는 일반사업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발행을 마친 주식 수의 합계

15%를 상한으로 할 것에 대체로 합의하였다.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간의 경과기간 중에 매각할 것을 명하게 된다. 같은 그룹의 금융기관 합산으로 15%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에의 커다란 장애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 금주에 이를 명확히 최종조정한 후에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제출, 내년 봄의 해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에서는 은행, 증권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수를 발행을 마친 주식 수의 5%(보험회사는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주회사 전체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다. 복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가지면 무제한으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장성은 은행의 타 영업 금지에 따른 건전성 확보와 산업지배방지의 관점에서 지주회사 전체의 상한을 두는 것으로 하여, 여당에 결정을 맡겨 왔었다.

여당 3당의 독금법협의회에서는 자민당이 20%, 사민당이 5~10% 정도를 상한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15%

에 대체로 합의하였다.

대장성이 6개 기업집단을 조사한 바, 그룹 내의 은행, 신탁은행, 손해보험회사를 합산하면 동일기업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가 4건 있었고, 최고는 18.78%였으나, 초과분은 5년 동안 처분하면 그다지 주가하락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결합·매수로 그룹 외의 금융기관을 산하에 넣는 다든지, 앞으로 법 정비가 진행되어 생명보험회사를 산하에 넣을 때에는 상한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보유주의 조정 압박을 받는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26일 확정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은행,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 대장성(금융감독청의 설립이 이루어지면 동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발하는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가짐을 명기하였다.

또한 기존의 은행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전되는 채권·채무가 방대한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와 新은행을 설립하여 기존은행이 新은행과 기업결합하는 「삼

각기업결합방식」을 인정하는 상법의 특례법안도 확정하였다.

■ 97. 9. 27. 일본경제신문